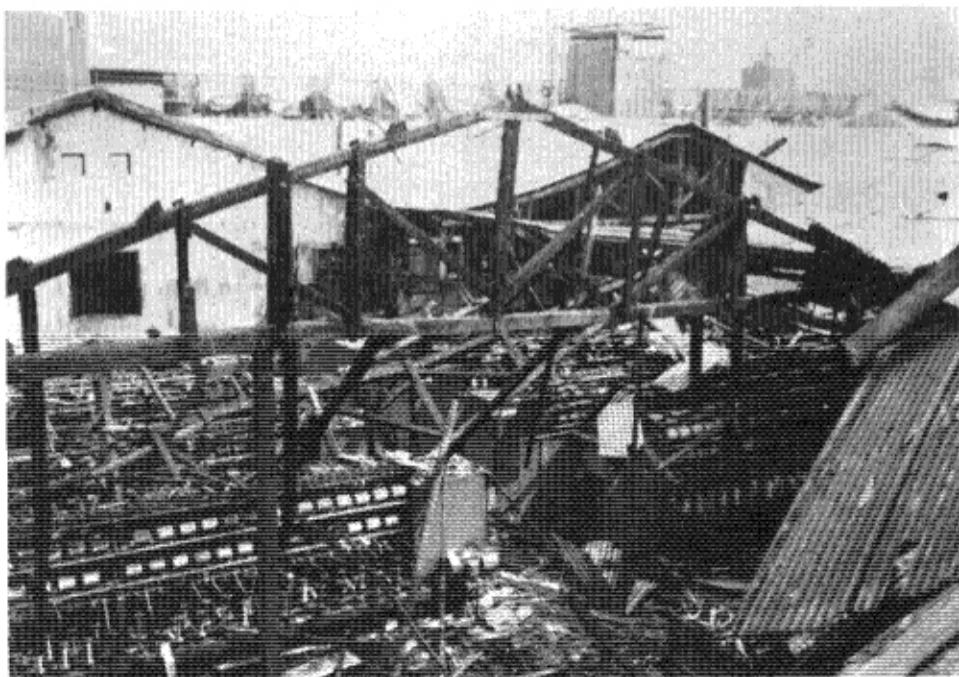


## P산업사 화재



P산업사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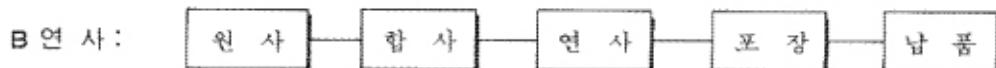
## 천정내의 낡은 전선에 의한 누전화재

## 1. 일반사항

- 건물명 : P산업사
  - 소재지 : 부산직할시 북구 소재
  - 화재일시 : 1987년 4월 7일 00시 22분경
  - 발화위치 : P산업사 내
  - 화재원인 : 전기누전

## 2. 공장개요

본 공장은 1,458m<sup>2</sup>의 대지위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구조 공장 및 창고부분 210m<sup>2</sup>, 조적조 슬레이트구조 공장 및 창고부분 829m<sup>2</sup>,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구조 창고, 숙소 및 수위실부분 363m<sup>2</sup>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된 연면적 1,402m<sup>2</sup>의 연동건물이다. 이 건물에는 P산업사와 B연사 공업사가 임차하여 동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P산업사는 신발밀창 제조업체로서 동건물 406m<sup>2</sup>를 사용하고 있으며 B연사 공업사는 원사가공업체로서 동건물 996m<sup>2</sup>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 3. 화재상황

화재는 1987년 4월 7일 0시 22분경, B연사 공업사측에서 야간작업 중 이 공장 소속 기사가 작업현장에 연기가 자욱히 끼는 느낌과 모터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나서 공장주위를 한바퀴 돌아보고 다시 공장에 들어가려는 순간 P산업측 철정부근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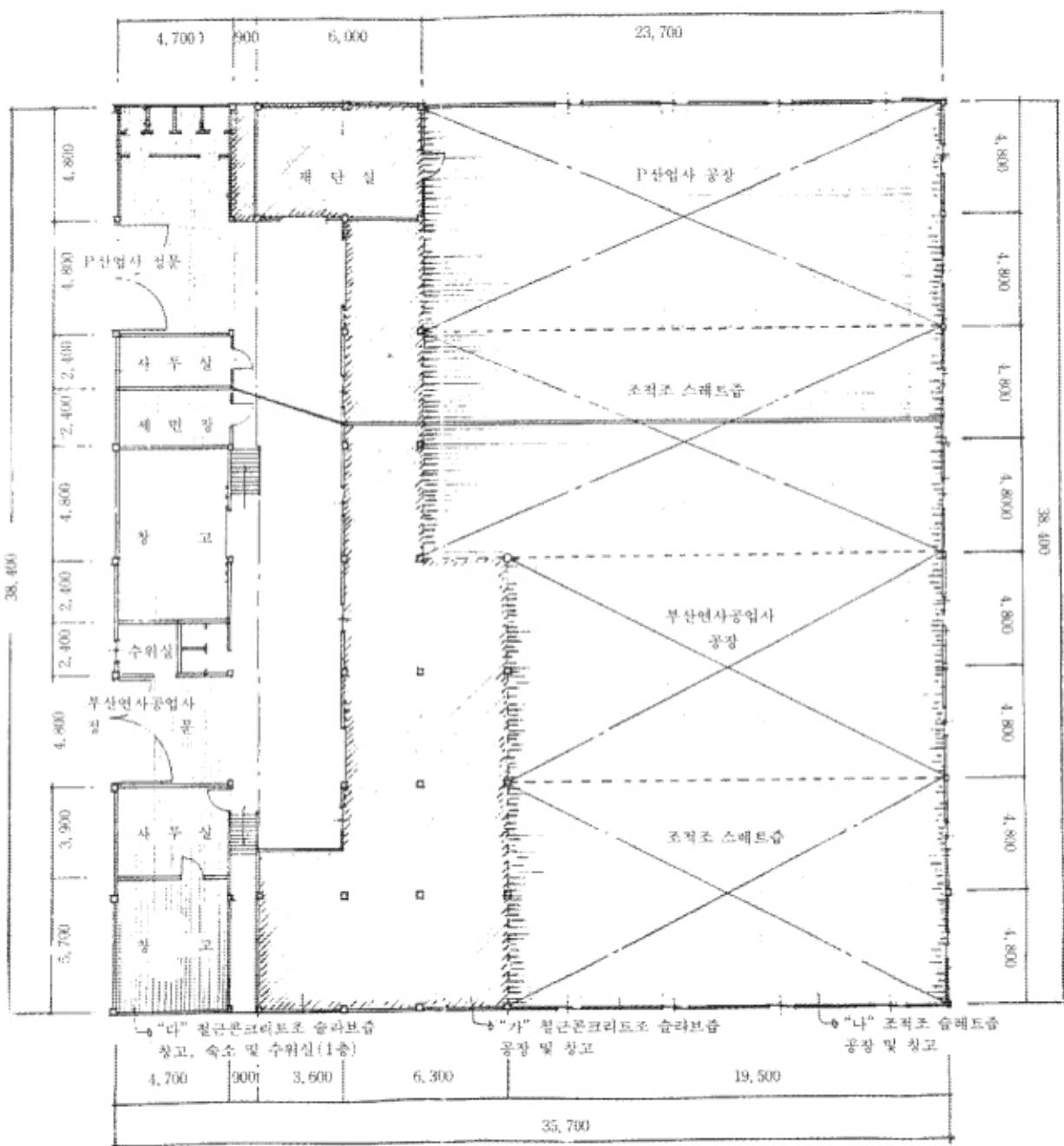


그림 1. 건물 평면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동료 직원과 소방서에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는 한편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으로 소화를 시도하였으나 공장내 적재된 다량의 가연물에 급속히 연소확대가 진행되는 동시에 심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초기소화에 실패하여 출동한 10여대의 소방차와 소방대의 진화활동으로 화재발생 약 1시간 후에 진화되었다.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화재발생 공장 천정내의 노후 전선에 의한 전기누전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결론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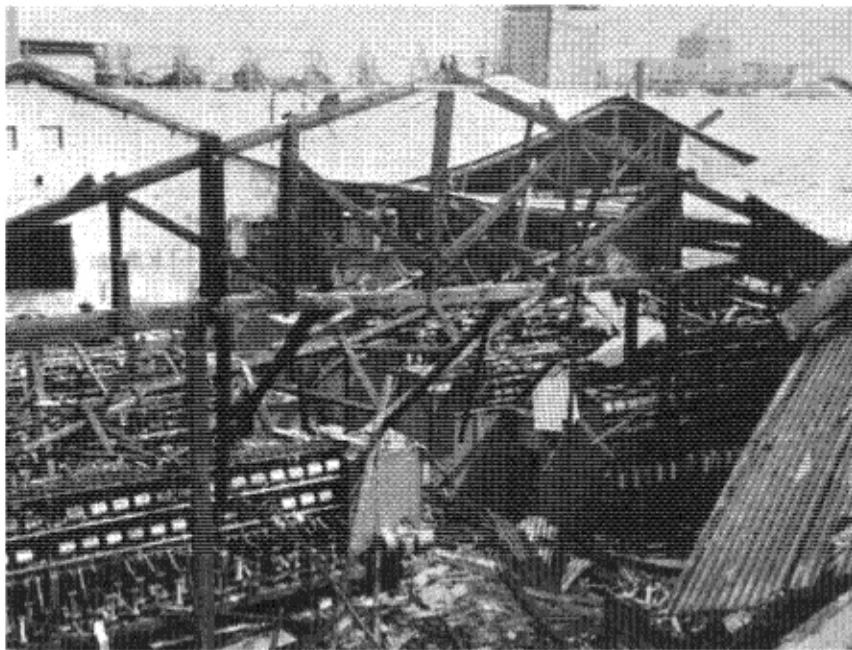
#### 4. 피해상황

이 화재사고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공장 및 창고부분 210m<sup>2</sup> 및 조적조 슬라브지붕 공장 및 창고부분 829m<sup>2</sup>이 대부분 소손되어 약 7천 5백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공장은 당협회의 신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보험금액 약 1억 2천만원, 보험기간 1986년 6월 18일부터 1년간) 가입되어 있었으며 자급보험금은 정미손해액인 약 7천 5백만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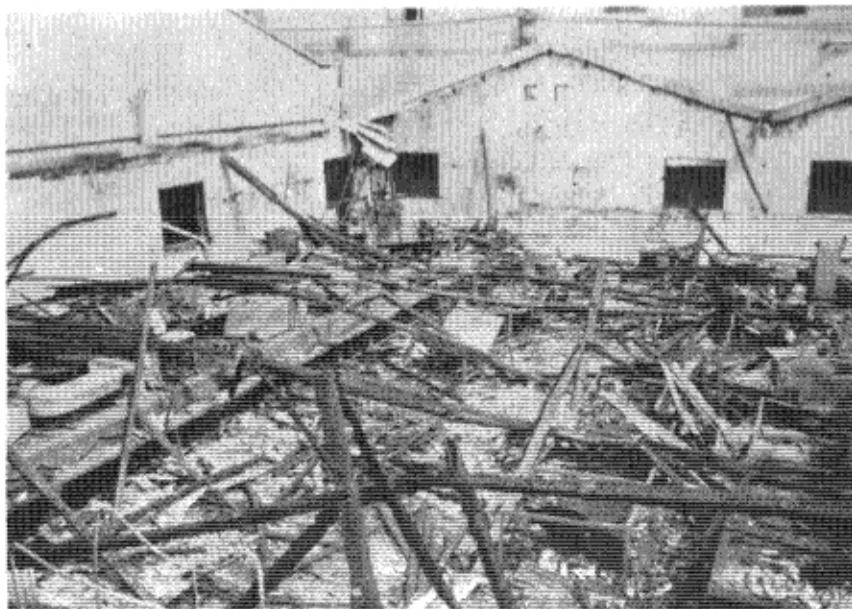
#### 5. 문제점 및 대책

이 공장은 화재발생시 설치된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작동치 않아 화재의 초기탐지에 실패하였고 옥내소화전 역시 유효한 방수량을 방수치 못하였으며 공정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각 공장의 방화구획이 미설치 상태여서 공장이 거의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본 공장은 화재발생 15일 전인 1987년 3월 23일 안전점검시 다음 사항을 개선할 것을 지적받았다.

-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정상 작동되도록 보수하여 상시 전원 연결하고 비상전원의 부설이 필요함.
- 본 공장은 연면적 1,000m<sup>2</sup> 이내마다 방화구획 설치.
- P산업의 고무풀은 인화성이 강하므로 별도 장소에 보관.
- 옥내 소화전설비는 정상작동 되도록 보완 및 가압장치에 상시 전원공급이 필요함.
- B연사 공업사의 연사기 주위의 전기설비는 방진구조로 보완이 필요함.



〈P산업사 소손 광경〉



〈B연사공업사 소손 광경〉